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진영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마련코자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관리청의 점검결과 공개시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공개(안 제3조 5항)

- 안전점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
-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
-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(조치계획 포함)
-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

나.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·도지사의 확인점검 결과의 공개시 점검결과를 관리청으로

14일 이내 송부하고, 관리청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공개(안 제3조 6항 신설)

- 안전점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
-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
-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(조치계획 포함)
-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7. 17. ~ 8. 26.) 예정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
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) ⑤ 관리청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1. 안전점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
2.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
3.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(조치계획 포함)
4.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완료 후 14일 이내 관리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청은 확인점검 결과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.

1. 확인점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
2. 확인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

3.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(조치계획 포함)

4.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) ① ~ ④ (생략)	제3조(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) ① ~ ④ (생략)
<u><신설></u>	⑤ 관리청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 1. 안전점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.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3.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(조치 계획 포함) 4.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 한 사항
<u><신설></u>	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실 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점 검완료 후 14일 이내 관리청으로 송 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청은 확인점검 결과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 이 공개하여야 한다. 1. 확인점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. 확인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3.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(조치계획 포함) 4.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5155